

관리 및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교통관리계정에 의한 사업 중 교통체계개선사업 버스전용차선, 일방통행 및 정체지점 개선사업에 신호등·차선·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중 재배정금액은 6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기존 교통관리계정의 유사한 업무와의 종합적인 조정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법령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61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하였습니다.('93-219억, '94-158억, '95-242억)

내재,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소요비용 세입 및 관련 세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당초 경찰의 권한이었으나 '90.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서울의 경우 구청장)에게도 단속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견인보관소의 운영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91.6.21. 우리 시가 3개 보관소(마장동, 여의도, 잠실)를 인수하였고, '91.10~'91.12월 중 3개 보관소(서부, 봉천, 북부)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6개 보관소의 운영을 시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서울시 전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개 보관소를 4,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러나 '96.1.1.부터는 사무주체와 비용부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관소를 구청장이 운영토록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현행 주차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예산 조항을 삭제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세입조항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중 서울특별시 수입분이며

○세출조항은 주차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부문 인건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되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喜甲 다음은 專門委員,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

1.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기존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방식이 교통관리계정, 주차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각각 독립된 계정으로 하던 것을 주차관리계정을 교통관리계정에 통합하고

○그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련 분야 예산의 지원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에서 하던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운영계정에 편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조례 제5조(주차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를 삭제하고 본 규정을 조례안 제4조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각각 삽입 함.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토록 함(조례안 제4조)

4. 검토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정을 두는 것은 특정사업을 위하여 특정 수입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그 분야에만 집행토록 하여 사업의 소관 영역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그 동안 주차담당관실 업무로

<p>주차장건설 및 관리예산을 별도의 계정으로 편성 주차장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만 집행토록 하였음.</p> <p>○따라서 그 동안 주차장건설 및 관리사업을 위하여 특정세입. 즉,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100에 해당되는 세입, 정부보조금,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이 주차관리계정 세입에 포함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특정세입과 세출간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음.</p> <p>○한편, '9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예산은</p> <table border="0"> <tr> <td>-교통관리 계정</td> <td>482억원</td> </tr> <tr> <td>-주차관리 계정</td> <td>660억원</td> </tr> <tr> <td>-교통방송운영 계정</td> <td>85억원</td> </tr> </table> <p>으로 편성되어 있어 적은 예산을 너무 세부적으로 계정을 나누워 편성·집행할 경우 회계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정적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p> <p>○그러므로 회계에 있어서 계정의 설치 및 폐지의 문제는 특정 세입이 반드시 특정 사업에 집행되도록 하는 목적세적 측면 즉,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발생한 수입은 반드시 주차장건설 및 관리에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교통정책 전반적 집행에 있어서 특정세입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즉,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탄력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방법간의 상호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한편, 그 동안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 일반회계에 편성,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해 온 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교통관련 예산을 한 회계로 통합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한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p>.....</p> <p>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교통관리 계정	482억원	-주차관리 계정	660억원	-교통방송운영 계정	85억원	<p>○委員長代理 金喜甲 수고하셨습니다.</p> <p>지금까지 條例案에 대한 交通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 여러 委員님들의 質疑와 答辯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다 深度 깊은 檢討와 委員님들의 충분한 檢討時間을 고려해서 기이 構成된 小委員會에서 條例를 審査한 후에 추후 委員會에 報告 審議토록 하고자 합니다.</p> <p>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異議가 없으시다 하므로 本 案件의 경우는 추후에 다시 上程해서 再審議토록 하겠습니다.</p> <p>○交通局長 諸他龍 來年度 豫算案 編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會期內에는 決定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委員長代理 金喜甲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再審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p> <hr/> <p>5. 交通局所管3/4分期主要業務推進實績報告의件 (15時 01分)</p> <p>○委員長代理 金喜甲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交通局所管 3/4分期 主要業務 推進實績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p> <p>○交通局長 諸他龍 主要業務報告 資料를 중심으로 해서 報告를 올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順 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5國政監査 受監結果 報告 2. 市內버스改善推進班 構成·運營 3. 버스 中央專用車路 示範實施 推進現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5國政監査 受監結果 報告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政監査 受監概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9.29.(금)-환경노동위원회 ○'95.10.10.(화)-내무위원회 ○'95.10.11.(수)-건설교통위원회 □交通分野 主要爭點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노동위원회>-없음 <내무·건설교통위원회> <p>○서울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추</p>
-교통관리 계정	482억원						
-주차관리 계정	660억원						
-교통방송운영 계정	85억원						